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8월 9일

제07-35호

DDA 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bsong@kiep.go.kr, Tel: 3460-1208)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Tel: 3460-1136)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주요 내용

- WTO/DDA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였음.

 -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은 무역왜곡보조총액 50~85% 감축(개도국은 2/3 수준), 최상위 관세구간 66~73%(개도국 44~49%) 감축, 민감품목은 유관세 세번의 4% 또는 6%(개도국은 선진국의 4/3 수준) 이내 제한을 제시하고 있음.
 -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스테펜슨 의장은 이중계수 스위스공식을 기초로 선진국은 8~9, 개도국은 19~23의 계수를 제시하면서 개도국 신축성 조항(조정계수+3)을 추가함으로써 개도국에게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이번에 제시된 세부원칙 초안은 그동안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절충 가능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합의될 세부원칙의 윤곽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서 세부원칙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관세감축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서 G4(미국, EU, 브라질, 인도)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수준의 수치가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면화보조금 감축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비농산물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의 계수 및 개도국 신축성 조항을 두고 브라질과 인도는 의장초안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한·미 FTA 등 주요 국가와 맺은 FTA를 십분 활용한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1. 농업 세부원칙에 대한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가. 국내보조 감축

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무역왜곡보조총액¹⁾은 지급액에 따라 3개의 구간(600억 달러 이상, 100~6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하)으로 나누어 50~85%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선진국보다 긴 이행 기간을 부여함(최근 가입한 신규회원국은 감축의무 면제).

표 1.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구간별 감축률

구간 경계(억 달러)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600	70~80%	[75][85]%
100~600	53~75%	[66][73]%
0~100	31~70%	[50][60]%

- DDA 진전의 3대 핵심 쟁점의 하나인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률을 66% 또는 73%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G4(미국, EU, 브라질, 인도) 간 타협의 발판을 제공함.
- 미국의 당초 공식 제안은 무역왜곡보조총액을 225억 달러까지 감축하는 것이었으며, 최근 비공식적으로 150~170억 달러까지 감축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이에 대해 G20 핵심 멤버인 브라질과 인도는 120억 달러까지 감축을 요구해 왔음.
- 이번 의장초안에 따른 경우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130~164억 달러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²⁾
- 이는 브라질과 인도의 요구보다 10~44억 달러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당초 공식제안인 225억 달러보다 61억~95억 달러 낮은 수준이며, 가장 최근 미국의 비공식 제안인 150~17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임.

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AMS) + Blue Box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2) 캐나다가 실시한 주요국의 국내보조감축 모의실험에 의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485억 달러로 이를 66% 또는 73% 감축할 경우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130~164억 달러가 됨.

- 따라서 의장초안은 비록 브라질과 인도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당초 또는 최근 제안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향후 G4 간 타협의 발판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2) 감축대상보조(AMS)

- 감축대상보조도 지급액에 따라 3개의 구간(400억 달러 이상, 150~400억 달러, 150억 달러 이하)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45~70%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선진국보다 긴 이행 기간을 부여함(최근 가입한 신규회원국은 감축의무 면제).

표 2. 감축대상보조의 구간별 감축률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구간 경계(억 달러)	감축률
70%	>400	[70]%
60%	150~400	[60]%
37~60%	0~150	[45]%

■ 감축대상보조의 품목별 상한 설정

- UR 이행 기간(1995~2000년) 동안에 지원된 평균 AMS를 적용함(단 미국은 UR 이행 기간에 지원된 총 AMS에 1995~2004년 기간의 품목특정 AMS 지원 비율을 적용).
- 개도국의 경우의 품목특정 AMS 상한 설정방법은 1)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중 선택된 기간의 평균 수준, 2)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product specific de minimis) 수준의 2배, 3) 해당연도 총 AMS의 20% 등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설정함.

- 의장초안에 따를 경우 미국의 감축대상보조는 60%를 감축하게 되어 미국의 당초 제안과 차이가 없음. 또한 감축대상보조의 품목별 상한에 있어서도 미국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2002년 이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제안으로 평가됨.

3)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와 블루박스

- 최소허용보조³⁾는 최소 50 또는 60%를 감축. 새로운 최소허용보조는 [이행 첫 해]에 적용 또는 [이행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 단 AMS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 또는 식량순수입 개도국, 또는 AMS를 지급하더라도 생계 농과 자원빈곤농가에 AMS가 모두 지원되는 경우 최소허용보조 감축의무가 면제됨. 기타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선진국보다 긴 이행 기간을 부여함.

표 3. 최소허용보조의 감축률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최소 50% 감축	최소 [50][60]% 감축

- 블루박스 상한은 선진국은 기준기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5%로 설정함.
-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스 상한 모두 미국의 당초 제안과 차이가 없어 미국이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나. 시장접근

1) 관세감축과 민감품목

- 관세구간은 선진국의 경우 20/50/75, 개도국은 30/80/130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률은 선진국의 최상위 구간에 66~73%감축을 제시하고 있음(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의 2/3 적용).
- 단 개도국의 평균 감축률은 [36] 또는 [4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감축률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함.

표 4. 구간별 관세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구간 경계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구간 경계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0~20%	45%	[48~52]%	0~30%	25%	[32~35]%
20~50%	55%	[55~60]%	30~80%	30%	[37~40]%
50~75%	65%	[62~65]%	80~130%	35%	[41~43]%
75% 이상	75%	[66~73]%	13 % 이상	40%	[44~49]%

- 3) 최소허용보조는 원래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지급액이 미미해서 감축의무를 면제한 보조금을 의미함. 즉 보조지급액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 민감품목의 수는 선진국의 경우 유관세 세번(관세가 있는 세번)의 [4] 또는 [6]%, 개도국은 선진국의 4/3 수준으로 제한함.
-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선진국의 경우 일반관세감축공식에서 1/3 이탈 시 국내소비량의 [3] 또는 [5]%, 2/3 이탈 시 [4] 또는 [6]%, 개도국은 일반관세감축공식에서 2/3 이탈 하며, TRQ 증량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적용함.

표 5. 민감품목 수

의장 1차 문서(4. 30)	모델리티 초안(7. 17)
1~5%	선진국은 [4][6] 개도국은 선진국 개수의 1/3 추가

- 의장초안에 나타난 관세감축률과 민감품목의 수 및 대우는 G4 간 타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초안에 나타난 최상위 관세구간의 감축률은 미국의 당초 주장(75%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G20 제안(70% 감축)과 유사하며, EU의 제안(60% 감축)보다는 높은 수치임. 그러나 EU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70% 감축 수용의사를 표명하였음.
- 민감품목의 수는 미국이나 G20의 당초 제안인 1%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4% 또는 6%를 제시한 반면 TRQ 증량은 미국 등 수출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3~6%를 반영함으로써 미국 등 수출국과 EU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특별품목(SP)

- 특별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⁴⁾ G33이 제시한 지표를 중심으로 추가협상에 대한 논의 방향만을 제시함.

3) 기타

- 관세상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G10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농산물세이프가드(SSG)도 이행 기간 동안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축소하거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만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운영하되 기존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제시함.

4) 의장 1차 문서(2007. 4. 30)에서는 특별품목의 수로 전체 세번의 5~8%, 관세감축은 최소 10~20%를 제시함.

2. NAMA 세부원칙에 대한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가. 관세인하 공식

- 의장초안은 당초 미국이 제시하였던 이중계수 스위스공식(선진국과 개도국에 별도의 조정계수 부여)을 기초로 선진국은 8~9, 개도국은 19~23의 계수를 제시하고 있음.

$$\text{선진국 적용 공식: } t_1 = \frac{A \times t_0}{A + t_0}$$

$$\text{개도국 적용 공식: } t_1 = \frac{B \times t_0}{B + t_0}$$

A=[8~9]=선진국의 조정계수, B=[19~23]=개도국의 조정계수
t0=현 양허 관세율, t1=협상 이후 감축된 관세율

- 한편 감축 기준으로는 기양허된 품목은 UR 최종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미양허 품목은 2001년 MFN 실행세율에 20을 더한 수치(MFN 실행세율+20)를 제시하고 있음.
- 의장초안의 의의는 과감한 관세인하를 가져오는 스위스공식의 채택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NAMA 협상의 기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DDA 진전의 3대 쟁점의 하나인 비농산물 관세감축률에 대하여 향후 협상에서 G4 간 타협 가능한 범위의 조정계수를 제시했다는 점임.
- 최근 포츠담 G4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는 선진국 8~9, 개도국 17~18의 계수를 제안했으나, 브라질과 인도는 농업보조금 감축과 비교해 개도국 계수 17~18은 개도국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를 거부한 바 있음(당시 브라질과 인도는 계수 30을 고수하여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 특히 브라질과 인도 및 NAMA 11 그룹은 선진국 10, 개도국 35의 계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개도국의 양허관세는 평균 50% 가까이 감축되며, 실행세율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약 25% 감축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계수는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반면 미국과 EU 및 여타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 접근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적용될 계수가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의장초안은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절충점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6월 말 남미 및 아시아 8개국이 주장한 ‘선진국 10, 개도국 18~22(the upper teens and the low twenties)’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포츠담 G4 각료회의가 결렬된 점을 감안하여 개도국 계수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진국 8~9, 개도국 19~23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됨.
- 의장초안에 따른 경우 선진국의 비농산물 양허관세의 평균은 3% 이하로, 그리고 관세정점(tariff peaks)은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의 경우도 비농산물 양허관세의 평균은 대부분 1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비농산물 양허관세 평균은 3.3%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이 보호해 오던 섬유류 관세가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EU의 경우도 관세정점인 최고관세 26%가 6.1%로 떨어지는 등 양허관세 평균은 3%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브라질의 비농산물 양허관세 평균은 30.8%에서 11.8%(계수 19 적용 시)~13.1%(계수 23 적용 시)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실행세율의 평균이 12.6%이기 때문에 의장초안은 브라질의 실행세율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특히 자동차, 전자, 광학제품, 화학 및 섬유 등).
- 그러나 인도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의장초안에 따르더라도 실행세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Flexibility) 적용

- 의장제안서는 2004년 7월 기본골격(framework) 제 8항에 언급된 ‘개도국 신축성 조항’ 반영을 위해 스위스공식의 조정계수에 3을 더할 수 있다는 반영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도국 신축성 조항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이미 상이한 조정계수 적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에 반대해 왔음.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은 이번 DDA가 개도국의 개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개도국 우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의장초안은 개도국 신축성 조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a) 공식 적용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은 아래의 신축성을 받을 수 있다:

- (i) 최대 10%의 세번까지 공식 적용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감축률은 공식 적용 감축률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회원국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 (ii) 예외적으로 최대 5%의 세번을 양허하지 않거나,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미양허 품목의 수는 회원국 비농산물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b) 위의 신축성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개도 회원국은 (개도국 조정계수+3)을 적용한다.

다. 분야별 무세화(Sectoral negotiations)

- 의장제안서는 그동안 분야별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야별 무세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 분야별 무세화 협상에서는 세계 무역에서 해당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생산량 또는 교역량)을 포함한 임계치(critical mass), 협상 분야 및 관세철폐 기간,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논의해 왔음.

- 분야별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자전거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수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보석류, 완구, 스포츠용품, 공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초재료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

- 의장초안은 향후 협상방안으로서 첫째, 각 분야별 세부 협상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세부협상방안 수립 1개월 후 참여 희망 국가는 참여의향을 분야별 협상국 및 사무국에 제출하며, 셋째, 세부 협상방안 수립 3개월 후에는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협상 초안(draft schedule)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라. 기타

- 비관세장벽(Non-tariff trade barriers)

- 의장제안서는 수평적(비관세장벽의 종류별) 및 수직적(품목별) 접근방식을 통해 비관세장벽

의 성격, 영향을 받는 품목의 범위,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하고, 협상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논의를 'text-based'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홍콩각료회의 선언문 부속서 F(Decision on Measures in Favour of Least-Developed Countries)」에 의거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 등 특혜 부여를 재확인함.
-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공식 및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서 예외로 인정함. 그러나 이들 국가도 미양허 품목을 양허하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고함.

■ 신규가입국(Recently accessed members: RAMs) 및 소규모 경제 국가(Small, vulnerable economies)

- 신규가입국 가운데 공식에 의해 관세를 인하하는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2년의 추가적인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신규가입국 중 소규모 경제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단 최근 WTO에 가입한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에 대해서는 DDA 협상의 결과를 적용하지 않음).
- 세계 비농산물 교역에서 0.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규모 경제에 대해 관세감축공식 적용 제외 등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

3. 평가

-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시된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부문의 의장초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이해를 절충한 성격의 문서로서 향후 협상 세부원칙의 윤곽(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수정 요구(개도국 우대 관련) 등으로 향후 DDA 협상이 밝지만은 않음.

가. 농업

- 의장초안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각국(개별 그룹)의 이해를 반영한 절충안 형태의 문서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의장제안서는 향후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절충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농업보조금 감축에서 미국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에서 미국의 최근 비공식 제안인 150억 달러까지 감축한다는 의견이 의장초안에서 제시한 구간에 포함된 점과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할 때 미국에 융통성을 부여한 점은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것임.
- 대신 관세감축에서는 G20안을 중심으로 EU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음.
 - 최상위 관세구간의 감축률이 EU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70%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민감품목의 수도 EU가 주장한 4%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임.
- 또한 G10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세상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개도국 특별품목의 경우 G33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 그러나 면화보조금에 대한 감축 부분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EU의 관심 사항인 지리적 표시(GI) 및 G33이 주장하는 특별품목에 대해서 의장초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원칙 합의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대우, 또는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경우 향후 협상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 민감품목의 수가 4% 이상이므로 개도국의 민감품목의 수는 그 이상이 되고, 특히 개도국의 특별품목까지 고려한다면 농산물 관세감축에 있어서 핵심 품목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농업보조금 감축도 이와 유사함.
 - 다만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의 협상결과를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쌀과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 유지가 중요함.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 초안에 나타난 공식계수(선진국 8~9, 개도국 19~23)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논의된 중간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논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스위스공식의 계수 결정을 서두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국, 개도국의 계수가 (8, 20)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0.45~1.51%, 후생수준은 30~61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⁵⁾
- 그러나 브라질과 개도국 그룹 NAMA 11은 이번 초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추가된 개도국 신축성 조항(조정계수+3)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논란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새로운 개도국 신축성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다만 새로 추가된 신축성의 부여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임. 개도국 계수에 3을 더한다고 해도 개도국 관세인하 폭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개도국은 더 큰 숫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⁶⁾
- 분야별 무세화 협상에서는 단계별 실행 데드라인을 정함에 따라,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과거의 행태로 보아 회원국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5) 위의 결과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서비스시장 개방(20%)을 전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0.7~2.4%, 후생수준은 41~93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서진교 외, 2006, 『DDA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6) 예를 들어, 현행관세율이 10%(20%)인 개도국의 품목에 개도국 계수 19와 22(19+3)를 적용한 경우, 최종 관세율은 6.55%(9.74%)와 6.87%(10.48%)가 되어, 그 차이는 0.32%(0.74%)포인트밖에 되지 않음. 당초 이와 유사한 제안을 했던 멕시코는 추가 계수의 크기로 5를 제안한 바 있음.